

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보
<a href="http://www.daedeok.go.kr">http://www.daedeok.go.kr</a>	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**제2022-83호**  
**2022. 12. 2.(금)**

## 차 례

### 고 시(2)

-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(고시 제2022-99호) ..... 1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22-100호) ..... 2

### 공 고(5)

-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2-1108호) .... 3
- 무연고 사망자 공고(공고 제2022-1115호) ..... 4
-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22-1120호) ..... 5
-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(공고 제2022-1121호) ..... 7
-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(공고 제2022-1140호) ..... 8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허가번호: 제2022-5호
2. 허가연월일: 2022. 11. 24.
3. 점용·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(성명) 중문공업사(박\*\*)
  - 나. (주소)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\*\*\*번길 \*\*
4. 점용·사용의 목적
  - 가. (목적) 진출입로, 주차장, 재활용품 적재
5. 점용·사용 장소의 위치 및 면적
  - 가. (위치)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02
  - 나. (면적) 287m<sup>2</sup>
6. 점용·사용허가의 유효기간: 2022.11.24. ~ 2027.12.31. 끝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 로 명 주 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
오정동 308-13	오정로77번길 63	2022. 12. 2	건물신축	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비래동 120-11	비래동로23번길 42	2022. 12. 2	건물신축	비래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2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비래동 391-1	비래골길 58-30	2022. 12. 2	건물신축	비래 골 자연마을 명 반영
비래동 391-2, -4	비래골길 58-32	2022. 12. 2	건물신축	비래 골 자연마을 명 반영
미호동 203-1	대청로526번길 84	2022. 12. 2	건물신축	대청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,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덕암동 65-16	덕암로125번안길 98	2022. 12. 2	건물신축	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,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(☎ 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<http://www.juso.go.kr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

##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자의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기간: 2022. 12. 2. ~ 2022. 12. 16.(15일간)
2. 근거법규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제37조제7항
3. 행정처분(직권말소) 공고내용
  - 가. 처분의 제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업소 직권말소
  - 나. 대상업소: 대덕구 장동로 271-2 (장동) / 내장동식당 (이○연)
  - 다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
- 내장동식당(사업자등록 폐업일 2000. 3. 31.)
4. 고지사항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.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: 위생과 위생관리팀 ☎(042)608 - 6902. 끝.

## 무연고 사망자 공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9조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1.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

성명	성별	생년월일 (연령)	등록기준지	발견일시 (사망일시)	발견(사망)장소	사망 원인	처리 방법
			주민등록상주소				
심명섭	남	58.12.12 (64)	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27번길 26의4 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, 104동 917호(법동, 한마음아파트)	'22.11.10.(목) 15:27경 [ '22.10.31.(수) 22:00경추정]	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, 104동 917호(법동, 한마음아파트)	미상	화장 후 봉안

#### 2. 발생상황

- 2022. 11. 10.(목) 15:27경에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됨.

3. 봉안기간: 5년(2022. 11. 23. ~ 2027. 11. 22.)

4. 봉안장소: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추모공원(1관1층-석류6087)

5. 공고기간: 2022. 12. 2. ~ 2023. 1. 2.

6. 연 락 처: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(☎ 042-608-6775). 끝.

## 공시송달 공고

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미 시정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목: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(2022년도 재부과건)
2. 공고기간: 2022. 12. 2. ~ 2022. 12. 16.(14일간)
3. 공고장소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송달대상: 붙임 참조
5. 송달내용

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, 같은 법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주택정책과(☎042-608-5143)로 연락 바랍니다.

아울러,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【붙임】 공시송달 대상

연번	소유자	위반건축물 소재지	위반내용	구조	위반면적 (㎡)	용도	발생 연도	비고
1	이*미	비래동 141-1	무단증축	경량철골구조	8.25	창고	1996	폐문 부재
2	김*자	신탄진동 143-31	무단증축	철파이프/천막	4.68	포장마차	1992	폐문 부재
				철파이프/천막	2.97	포장마차	2001	
3	박*진 이*모	신탄진동 143-31	무단증축	철파이프/천막	10.50	음식점	1995	폐문 부재
				철파이프/천막	5.60	음식점	1995	
4	장*진	중리동 411-9	무단증축	철파이프구조	21.0	일반음식점	2005	폐문 부재
				조립식패널구조	13.2	창고	1992	
5	정*진	송촌동 565-29	무단증축	시멘트블럭구조	16.2	근린생활시설	1993	폐문 부재
6	유*준	읍내동 343-12	무단증축	철파이프구조	32.50	일반음식점	1999	폐문 부재
7	육*순	송촌동 465-9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7.2	창고	2006	폐문 부재
8	이*주	중리동 500-11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10.80	주택	2002	폐문 부재
9	김*란	비래동 137-35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6.60	주택(창고)	1997년 이전	폐문 부재
				경량철골구조	1.91	주택(발코니)	1997년 이전	
				조립식패널구조	6.88	주택(창고)	1997년 이전	
10	오*엽	신탄진동 120-12	무단증축	철파이프구조	14.22	창고	2014	폐문 부재
11	길*환	신탄진동 174-14	무단증축	시멘트블럭구조	19.15	주택	1991	폐문 부재
12	임*영	중리동 241-7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19.6	주택	2000	폐문 부재
13	김*숙	비래동 137-37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9.31	주택(창고)	1999	폐문 부재
				조립식패널구조	4.30	주택(창고)	1999	
14	김*엽	비래동140-1	무단증축	컨테이너구조	6.25	창고	2005	폐문 부재
15	최*영	중리동 119-6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8.51	소매점	1995	폐문 부재
16	이*연	비래동 555-7	무단증축	시멘트블럭구조	1.5	음식점	1999	폐문 부재
17	이*빈	신탄진동 120-12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28.74	창고	2014	폐문 부재
18	이*숙 한*수	대화동 35-411	무단증축	시멘트블럭구조	48.6	주택	2009	폐문 부재
19	김*희	평촌동 535-1	무단증축	일반철골구조	3	계단	2013	폐문 부재
20	송*자	연축동 200-4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9	창고	2006	폐문 부재
21	박*훈	대화동 568-14	무단증축	컨테이너구조	18	주택	2020	폐문 부재
22	황*숙	중리동 239-33	무단증축	철파이프구조	3.6	주택	2009	폐문 부재
23	박*식	중리동 254-27	무단증축	철파이프구조	14.06	주택	2011	폐문 부재
				조립식패널구조	9.9	주택	2001	
24	유*상	비래동 137-5	무단증축	조립식패널구조	4.8	창고	2001	폐문 부재
				조립식패널구조	9.6	창고	2001	

##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목: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취소(자진반납) 공고
2. 근거법규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
3. 공고기간: 2022. 12. 2. ~ 2022. 12. 31.(30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등록번호	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변경등록내역		
			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대덕구 제2013-01호	(주)대전공업사 (전준식)	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86 (상서동)	기술인력 (정비·점검분야)	김민수 이해연	이해연 이우석

※ 최초등록일: 2013. 8. 1.

5. 기타: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(☎042-608-68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##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대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입찰 참가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에 대부 재산의 현장 및 도시계획저촉, 행정상 제한사항 등 관련 공부를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2일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입찰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2동청사 임대점포 대부 입찰 공고

나. 대부 대상 공유재산 표시

- 1) 대지위치: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(법동 192-1)
- 2) 건축물: 지하1층 지상5층(철근콘크리트/슬래브)
- 3) 대부 대상 점포

구 분	면적(㎡)	용 도	대부기간	예정가격(원)	비 고
지상1층	460.28	근린생활시설 (간이휴게음식점)	2023.02.01. ~ 2027.01.31.	<b>124,601,000</b> <b>(부가세 별도)</b>	용도변경 불가

※ 1년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대부기간 중 최초 연도 대부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되고, 2차 연도 기간의 대부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 의거 산출·부과됩니다.

<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 산정 기준>

$$\frac{\text{당해 연도의 재산가액} \times \text{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대부료}}{\text{입찰당시의 재산가액}}$$

#### 다. 입찰·개찰 일시 및 장소

입찰 시작 일시	마감 일시	개찰 일시	개찰 장소	비고
2022.12.05.(월) [10:00]	2022.12.14.(수) [16:00]	2022.12.15.(목) [10:00]	대덕구 토지정보과 입찰집행관 PC	

#### 2. 입찰 및 참가방법

- 가.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,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『온비드』 라 합니다. <http://www.onbid.c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.
- 나.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,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(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)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
- 다. 입찰 진행 시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본 입찰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.
- ※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(콜센터 1588-5321)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#### 3. 입찰가격

예정가격 기준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은 1년간의 대부료로 자동 결정되며, 대부료 납부는 대부 시작일 이전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# 4. 입찰참가자격

- 가. 온비드 이용자(회원)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(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)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
- 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」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다.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## 5. 입찰서 제출

- 가. 입찰서는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다.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,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 시간 및 입찰 마감 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라.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
## 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

- 가.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(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)의 10% 이상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(분할납부 불가) 납부하여야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,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입찰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다.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,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.
- 라.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,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,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,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마.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,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, 업무처리  
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 
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
발번(가상계좌번호 발생)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  
하며,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  
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.
- 바.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 
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 
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.
  - ※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  
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,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  
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 
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  
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사.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대체합니다.
  - ※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 
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.

## 7. 입찰의 무효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 
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 약관  
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  
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나.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
- 다.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,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  
하지 아니한 경우,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

## 8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 
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시  
스템상(공매공고-연기공고, 취소공고)의 게재에 의합니다.

## 9.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나.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(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)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다.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[나의 온비드 > 입찰관리 > 입찰진행내역]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## 10. 낙찰자 제출서류

- 가. 주민등록등본 1부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)
- 나. 인감증명서 1부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)
- 다. 인감도장, 주민등록증 지참
- 라. 사업자등록증,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
※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

## 11.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닐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.
- 나. 대부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.

## 12. 대부 조건: 붙임 대부 조건 참조

## 13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,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- 나.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, 입찰참가자는 본 대부대상 재산의 현장 확인을 하여 대상 재산의 여건, 사용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응찰 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대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라.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권리의 양도, 양여,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.
- 마. 낙찰자가 대부허가 기간 중에 스스로 대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간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바.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온비드([www.onbid.co.kr](http://www.onbid.co.kr)),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되며, 공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온비드 내용을 따릅니다.
- 사.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 (1588-5321),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(042-608-53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유재산 대부 조건 1부. 끝.

[붙임]

## 공유재산 대부 조건

제 1 조 (대부용도) 재산의 사용 용도는 입찰공고문의 용도로 한다.

제 2 조 (대부기간) 대부기간은 입찰공고문의 기간으로 한다.

제 3 조 (대부료) 대부금액은 최고낙찰가액으로 하며 낙찰된 금액은 1년간 대부료로 본 구에서 지정하는 은행예금 계좌로 계약 체결시 지정한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재해복구회비 납부) 임차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받은 재산의 면적에 대하여 재해복구회비(화재보험)부담액을 매년 3월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임대재산의 보존)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임대재산의 부과금) 임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임차인의 행위제한) 임차인은 본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임대 용도를 변경하는 것
2. 임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3. 임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4. 임대받은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

제 8 조 (임대취소)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구는 임차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임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

2. 임대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배한 때
3. 기타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9 조 (임대 취소 시 손해배상) 본 임대조건을 위반으로 임대를 취소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임대취소 요청) 임차인이 임대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임대취소 원서를 본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새로운 임차자 선정에 드는 비용 및 임대료에 의한 본 구의 재정수입에 대한 손해는 임차자가 부담한다.

제 11 조 (사용재산의 반환)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임대취소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당해 공유재산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제 12 조 (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) 임차인은 본 임대조건을 이행할 때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 13 조 (임대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) 본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.

제 14 조 (계약기간) 계약기간 만료 시 본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임차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5 조 (어구의 해석)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와 임차인의 협의 후 본 구의 결정에 의한다.

제 16 조 (특수조건)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자 또는 출자한 대부는 불가하며



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 본 구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,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본 구에게 임대건물을 반환할 시에는 시설비용 및 권리금 등을 주장하지 못하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## 특 약 사 항

1. 재해복구회비 / 매년 기준에 의거 부과
2. 본 건물의 전용 임대 부분인 벽체, 바닥, 천장수장 공사 및 조명기구 부착 등 인테리어 공사와 개별 냉난방 설비공사는 임차인이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.